

6.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1월 27일

○ 발 의 자 : 이성오·이영애·김재우·김지만·김대현·김원규·조경구  
박종필·권기훈·이재숙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 상정일자 :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년 2월 9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성오 의원)

### □ 제안이유

- 시장이나 공장·창고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이런 위험지역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화재의 예방 등에 필요한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대구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

## □ 주요 내용

-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한 것으로 소방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정의 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추진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종류, 설치 지원 대상자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원하도록 했음.
- 안 제8조는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경우에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계 법령 위반이나 다른 기관 등에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정산 및 부당 지급된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를 정한 것임.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이 제정조례안은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제19조제3항6)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시행 2022. 12. 1.)에 따라 기존 ‘화재경계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법 제18조7)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안전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 ▶ 소방관서장은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 포함)를 명할 수 있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현재 6곳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대구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총 6곳)**

연번	대 상 명	위 치	지정사유	지정연월
1	서문시장	중구 큰장로26길 65 일대	시장지역	1977.1.1.
2	교동시장	중구 교동길 40 일대	시장지역	1977.9.30..
3	남문시장	중구 명륜로 70 일대	시장지역	1977.9.30.
4	동화사지구	동구 동화사1길 1 일대	목조건물 밀집지역	2008.10.1.
5	대한송유관공사	동구 대경로 31-27 일대	위험물시설 밀집지역	2018.12.31.
6	칠성본시장	북구 칠성시장로7길 9-5 일대	시장지역	1977.1.1.

**○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조례안은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소방대상물”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8)의 소방대상물로 그 중 차량과 선박은 제외하였고 이는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한정한 것임.

8)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였음.
-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에 명시하였으며,
  - 별표에서는 소방청 표준조례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화재예방 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방설비와 안전설비의 종류를 열거하였음.
-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음.
-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였음.

□ **우선 지원 대상(안 제8조제1항)**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안 제8조제2항)**

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방법과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자가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구시에서는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마련하여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9)에 해당하는 경우나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음.

- ▶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음.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제정안 제출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 다만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과 함께 소방설비 등 설치 지원으로 화재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참 고**

**최근 3년(2020~2022년)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발생 현황 및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현황**

- ⇒ 화재발생 : 7건, 피해현황(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12,231천원)
  - 2022년 : 1건(서문시장-1,097천원)
  - 2021년 : 2건(서문시장-3,254천원, 교동시장-475천원)
  - 2020년 : 4건(칠성시장(3건)-371천원, 서문시장-7,034천원)

**화재안전조사 결과**

⇒ 결 과 : 화재안전조사 22회, 조치명령 10건

연번	대 상 명	조치사항
1	서문시장	(1지구) ○ 조사일 : 2022. 11. 10. (보완일자 : 2022.12.25.) - 지상3층 화장실 입구 옥내소화전 기동스위치 동작 불량(기동상태 유지 불량) - 지상2층 중앙계단 입구 옥내소화전 펌프 표시판 식별 용이한 부분에 부착요함 - 지상 3층 펌프실 SP 주펌프 동작 불량 ○ 조사일 : 2020. 9. 24. (보완일자 : 2020.11.25.) - 유도등 미설치(3층 회의실, 1,2층 관리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및 예비펌프 결선 불량 - 소화전 앵글밸브 전 개폐밸브 잠김 - 3층 기계실 감지기 고정불량 - 속보설비 결선상태 및 상황실 연계불량 - 불법건축물 (2지구) 최근 3년간 조치사항 없음 (5지구) 2021년, 2022년 조치사항 없음 ○ 조사일 : 2020. 9. 18. (보완일자 : 2020.11.25.) - 건물 서편 지하주차장 비상발전설비실 내 급배기 댐퍼 정상작동 요함 - 건물 서편 지하주차장 관리실 내 감지기 누락 (동산상가) 2021년, 2022년 조치사항 없음 ○ 조사일 : 2020. 10. 8. (보완일자 : 2020.12.11.) - 지하 동편 SP헤드 살수장애 - 지하 동력제어반 옥내소화전 off등 멸등 - 4층 속보설비 비상연락망 번호 변경 (아진상가) 2020년, 2021년 조치사항 없음 ○ 조사일 : 2022. 12. 8. (보완일자 : 2022.12.15.) - 계단통로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외 3개 (건해산물 상가) 최근 3년간 조치사항 없음 (명품프라자) 2020년, 2021년 조치사항 없음 ○ 조사일 : 2022. 11. 10. (보완일자 : 2022.12.25.) - 옥상 펌프실 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펌프·보조펌프 표시판 수정요함 (옥내소화전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펌프 체크밸브 불량 - 전 층 유수검지장치실 내 배관 관통부 내화충전 요함 - 지상 4층 상가번영회 사무실 앞 완강기 표시판 미부착 - 지상 3층 서편 계단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
2	교동시장	최근 3년간 조치사항 없음
3	남문시장	○ 조사일 : 2017.09.21. (2023.6.30.일까지 보완기한 연장) - 부적합 시설(소화, 경보, 피난시설 등 불량 43건) 조치명령
4	동화사지구	○ 조사일 : 2021.11.29. (보완일자 : 2021.12.29.) - 옥외소화전 동력제어반 릴레이 작동 불량 - 대응전 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5	대한송유관공사	최근 3년간 조치사항 없음
6	칠성본시장	○ 조사일 : 2022.11.15. (보완일자 : 2022.12.30.) - 경명시장 B동 4층 도통단선 ○ 조사일 : 2021.11.15. (보완일자 : 2021.9.30.) - 경명시장 유도등 점등불량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절차와 지정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일선 소방서에서 지정해서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에서 심의회 개최를 통해 선정하며, 화재 예방강화지구에서는 소방점검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현장 조사와 소방순찰 등이 강화됨.
○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지정되었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등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관리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없는지?	○ 전국적으로 15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6개로 비율로는 4~5%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생각함. 현재 성서공단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석유화학공장과 같은 위험물 집중 지역 부분만 한정하여 지정하기가 어려워 공단 전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실제 관리에 한계가 있는 등 애로사항이 존재함.
○ 공단은 워낙 규모가 커서 세분화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더 많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화재에 취약한 곳을 관리하기 위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중증관리대상 320개소에 대해 매년 1회 의무 점검을 실시하며, 화재예방강화지구는 대상이 아닌 더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라 시장은 규모가 큰 것을 위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시장의 경우는 1977년에 지정하였고 그 대상도 현재는 필요성이 부족한 곳이 많은데 장기간 현행화가 안되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 충분히 공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지적 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겠음.

질 의	답 변
○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조례가 제정되면 적정 수준의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으며,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임.

## 5. 토론 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